www.moel.go.k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01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CONTENTS

01 총론 1

02 정의(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 5

0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12

0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8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등

0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40

1

총 론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A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3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 의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

Q4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A

-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Q6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등 참조)

○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공공행정 등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관리자 등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그 외의 조항은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Q7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Q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Q9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요?

A

-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Q10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
 상시 근로자 수 =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1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A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1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A

-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Q13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

-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Q14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Q15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A

-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16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A

-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A

-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Q18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Q19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A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20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

-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1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요?

A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안전 경영의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3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A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Q24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시행령 제4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Q25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Q26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A

-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Q28 '22.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22.6.30.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9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A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기존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30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Q31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도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의미하나,**

 -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에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32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A

○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Q33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A

-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34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요?

A

-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Q35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Q36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